

총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5.08.07.(목)]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페이지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시,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 전화(1866-0243) 및 홈페이지(https://yeonsu-honorsville.co.kr)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인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에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2025.06.30. 시행된 '주택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자격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충주시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택지유형	민간택지		

1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8.12(화)	25.08.13(수)	25.08.14(목)	25.08.22(금)	25.08.25(월) ~ 25.08.28(목)	25.09.02(화) ~ 25.09.04(목)
방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총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견본주택 (주소 :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일만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건축과 - 34971호(2025.08.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4개동 총 243세대 [특별공급 132세대(기관추천 24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56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 000338	01	084.9986	84	84.9986	27.0916	112.0902	62,1220	174,2122	51.0164	243	24	24	56	7	21	132	111	12
합계				243	24	24	56	7	21	132	111	12						

- ※ 평형환산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 분양 홈페이지(https://yeonsu-honorsville.co.kr)의 등·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84	243	101동	2층	12	139,019,855	349,980,145	489,000,000	5,000,000	19,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3층	12	139,019,855	349,980,145	489,000,000	5,000,000	19,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4층	12	139,019,855	363,980,145	503,000,000	5,000,000	20,15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76,050,000	
		1,2,3층	5~9층	60	139,019,855	377,980,145	517,000,000	5,000,000	20,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103층		68	139,019,855	390,980,145	530,000,000	5,000,000	21,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2,3층	10~15층	68	139,019,855	390,980,145	530,000,000	5,000,000	21,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04동	16~20층	45	139,019,855	399,980,145	539,000,000	5,000,000	21,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1,2,3층	21층 이상	34	139,019,855	410,980,145	550,000,000	5,000,000	22,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92,500,000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 대금	우리은행	1005-304-812786	에스엠자산개발(주)건설부문	입주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11,000,000	1,100,000	9,900,000	

※ 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우리은행	1005-904-797063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

3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제2항 (혼인특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양양한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충족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기액 선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청약공고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한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로 인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공급기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행(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56세대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7세대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1세대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정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한도 공고는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 불가)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일반공급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설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설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5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다우이씨
감리금액	954,585,940	271,150,000	80,850,000	44,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총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5-101-0001000 호	83,061,5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공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및 시공사
상호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
주소	경기도 군포시 변령로 504(신분동, 산본역)
법인등록번호	135111-0040869

- 브랜드 공동사용 업무제휴 협약
 - 경남(기업주),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 사이에 2025.06.20. 체결된 '브랜드 공동사용 및 시공관리 업무제휴 협약서'에 의해,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이 자체분양 사업 또는 도급공사를 수행할 경우에 경남아